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16 선고 2019가단116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주식회사 E

변론 종결2019. 9. 4.

판결 선고2019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,44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8. 11. 30.부터 2019. 3. 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-6호증,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(피고 D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의 자백간주규정을 적용한다),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 C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, 피고 D, 주식회사 E은 피고 C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 40,440,000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. 11. 30.부터 2019. 3. 4.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.

판사정동주

별지